

충북과학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00. 10.24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2000년 10월 17일 제출

○ 회 부 : 2000년 10월 19일

3.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25조 4항의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는 신입생 확보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청주지역의 대학홍보거점 확보와
- 타대학과 비교하여 적은비용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 적극적인 사회교육원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향후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사회교육원』 설치 관련조항 신설
 - 제6장에 “사회교육원” 신설
 -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둠 (안 제28조)
 - 충북과학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규정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9조)
 - 제6장 신설에 따른 “제7장” 및 “제8장” 조문 정비

5. 검토의견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항에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 지는 신입생 확보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충북과학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을 설치함으로써 대학홍보거점 확보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사회교육원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향후 평생 교육센터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 설치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